

2024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발신: 이주인권단체공동 (담당: 김연주 010- / 남지은 010-)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귀하

제목: [보도자료]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 이주민 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매년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7일(일)에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여전히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과 혐오, 착취는 그대로입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2012년, 2018년에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 인종차별을 지적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책개선은 더디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후퇴적 정책이 강화되며 인종차별이 제도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권리 없는 외국인력 규모 확대만 급급하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빼앗기는 이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법’ 낙인을 휘두르며 미등록 이주민의 존재를 단속하고 일상을 빼앗는 일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이주민을 인구절벽, 노동력부족, 지역소멸에 대한 ‘이주민 도구’로만 여기며 각종 차별과 착취를 당연시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돌봄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는 인종차별적 주장을 정치권을 비롯해 한국은행까지 버젓이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대 정당들에서 이주민 권리보장에 대한 정책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차등 요구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이주민 차별 의제가 충분히 다뤄지고 권리보장 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규탄하고 평등한 권리보장 정책을 촉구하는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계획

● 정당에 발송할 각 총선 요구안은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부합니다.

2024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차별 혐오 정치는 그만!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

- 일시: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관: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이주민연대

○ 공동주최 : 이주민단체 공동 주최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미얀마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서울본부, (사)이주민과 함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CERD권고이행모니터링단,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대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여성인권포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동포총연합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민권센터),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나오미센터, 성요셉노동자의 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와 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민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살림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살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보호를위한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동두천가톨릭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단법인두루,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의창,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와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사목위원회 파주EXODUS, 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기자회견 내용

- 1) 사회: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 2) 진행 순서
 - 여는 발언: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총선요구안 발언 (이주정책): 고기복(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 총선요구안 발언 (이주노동):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총선요구안 발언 (이주여성):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총선요구안 발언 (난민): 김진 (난민인권네트워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이주민 권리보장 요구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후 각 정당에 요구안 정책 질의서 발송

[여는발언]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오늘 3월 21일은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은 노동기본권도, 인권도, 인종차별 철폐도 거론하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직장변경의 자유박탈에 더해 이전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박탈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정주노동자(내국인노동자)에 비해 세배에 달하는 임금체불율,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 열악한 거주환경, 낮은 의료접근권 등 그들이 당하고 있는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다를 말하기 힘들 만큼 총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들의 노동기본권과 삶의 문제에 눈을 돌리기 보다 한국이 처해있는 노동력 부족과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 특히 자본의 이익과 돈벌이에 충실히 화답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기인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천박한 인식과 정책이 결국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의 삶을 한낱 소모품으로,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조차 이주민들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러한 행태는 근로기준법 위반, 국제협약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인종차별이자 인권유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꾸짖고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처우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의 정치권도 이를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주민들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공약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합니다.

동등한 사람이며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제한과 지역제한을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주시설을 보장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근절하고 체불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등록이주민 단속추방 그만하고 체류권 부여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폐쇄, 예산삭감 등 이주노동자 지원 인프라 축소 철폐하고 지원정책 확대해야 합니다.

숫자 확대만 하는 이주노동정책 중단하고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면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이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불평등과 차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인권을 위해 쉼 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총선요구안 발언 (이주정책)

고기복(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을 앞두고, 250만 재한 이주민들은 코로나19 당시 이주민들이 겪었던 차별과 배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했던 250만 이주민들은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의 요구를 말하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은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계절노동자제도 등의 외국인력제도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장 변경 제한은 물론이고, 지역 이동제한까지 더해져 이주노동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이고,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제한 받고 있다. 계절노동자제도에서는 법무부의 체류 관리 중심의 관리로 인해 브로커의 중간 착취와 노동권, 인권 침해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쉽게 임금체불을 일삼고 있다. 한 해 1200억이 넘는 임금체불액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체불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미흡하다.

휴게, 휴일 조항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63조는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을 과도한 노동시간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열악한 기숙사 환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벌어지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수도 없이 시민단체와 언론이 요구해도 전체 이주노동자 절반 이상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임시가건물에 살고 있고, 농업에서는 70퍼센트일 정도다. 기숙사 개선 요구에 대해서 정부와 고용주들은 요지부동 현실을 이대로 놔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도입, 계절노동자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고통 받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반인권적인 강제 단속추방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19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 역군들이다. 특히나 농어촌에서는 미등록자 단속 때마다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농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을 정도로 필수 인력이요,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다. 우리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통해 정부가 이주민 인권 개선과 사회통합의 단초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작년 정부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예산 복원과 함께 이주노동자 지원인프라 확대를 촉구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변화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인종차별, 외국인혐오가 판을 치는 총선이 아니라 연대와 지지, 상생을 말하는 22대 국회를 기대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총선요구안 발언 (이주노동)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

오늘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21세기 현재도 인종, 국적, 피부색, 언어,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 여전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고통받는 이주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이주노동자 도입 역사가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 노동자가 아니라 무권리 일회용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업장 변경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장시간 강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 동의 없이는 일 힘들어도 근로조건 열악하고 안전하지 않고 위험해도 처우가 안좋아도 기숙사 열악해도 그 사업장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벗어날 방법은 사업장이탈뿐입니다. 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한 모든 권리가 사장한테 있어서 사장들은 이주노동자를 마음대로 착취하고 근로조건, 태도, 처우, 임금, 안전, 숙소를 하나도 개선하지 않습니다. 고강도 노동, 위험한 현장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에서는 근로기준법 63조 예외조항 때문에 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한달에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연장근로 수당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용허가제 폐지해서 사업장 변경 등 모든 권리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실시 요구하지 오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업장 변경 자유는커녕 정해진 지역내에서만 일하게 하는 '지역제한'까지 추가해서 지역 이동권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뿐만 아니라 숙련인력제도 E7-4, 특정활동 E7, 회화강사 E-2, 계절노동자 E-8, 선원노동자 E-10 등 거의 모든 취업비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박탈하여 강제노동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주노동자의 숫자만 늘리고 권리는 축소하는 정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이윤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권리 자유 얘기하지 말고 한국경제를 위해 희생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절벽, 노동력 부족, 지역소멸 문제로 인해 이주노동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대우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고 기계나 노예도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도 한국사회 구성원이고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로서 사람으로서 동등한 권리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대 정당과 그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공약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각 정당이 인종차별적 법제도 폐지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삶 권리도 중요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안전, 건강권, 주거권, 강제노동에서 보호받을 권리, 가족동반권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등록 노동자 체류권 부여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요구 받아들여서 잘못된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책, 법제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강제노동, 인종차별, 노동착취, 위험노동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총선요구안 발언 (이주여성)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국의 이주여성은 전체 이주민 인구의 45% 정도인 100만명 수준이다. 이주여성들은 동포, 결혼, 노동, 유학, 난민 등 다양한 체류 신분으로 살아간다. 이주여성들은 이주자와 여성이라는 복합 차별에 직면하고, 젠더기반 폭력을 경험한다.

한국 정부는 체류 자격을 엄격하게 부여하고,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공적 지원 체계는 주로 한국남성의 법률혼 배우자, 또는 한국 국적 자녀의 어머니라는 지위를 통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왔다. 이는 젠더기반 폭력 피해의 지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국인의 법률혼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당하더라도 법률로써 입증할 때만 체류 안정이 보장된다. 또는 한국 국적 자녀가 있어서 자녀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체류가 허용된다. 한국인의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라면, 예컨대 외국인 부부 사이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체류는 보장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여러 피해자 지원 제도에서도 배제된다.

하라인 기능을 하는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상담소, 이주여성쉼터로 구성되는 지원체계는 체류 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한계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나 임시가설주택 등을 기숙사로 제공받기도 한다. 화장실, 목욕 시설이 열악하여 여성 관련 질병에 취약하거나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은 인신매매와 성착취에 노출되어 있다.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한국인과의 법률혼 밖에서 자녀를 출산한 이주여성은 자녀의 출생등록을 하기 어렵다. 자국 대사관을 통해서 출생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라마다 국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등록 정책이 다 달라서 어렵거나 대사관이 한국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담소나 쉼터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체류권과 사회복지 향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자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

한국의 이주여성 공적 지원체계는 관련한 시민사회 운동의 압력을 통해 형성해 왔다. 하라인, 상담소, 쉼터에 대한 정책 제안은 모두 민간에서 제안되었고, 입법 운동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정부는 현장 사례를 통해 제안하는 엔지오의 정책 요구안에 대하여 한국남성의 배우자 지원 수준으로 일부 수용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

때문에 2024년 총선에서는 이주여성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외국인 가족을 포괄하는 다문화 가족의 정의 확대,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 체계 확대,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의 이주여성 일자리 보장, 이주여성상담소 확대,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이주여성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성폭력 대책, 모성보호 방안 마련, 국내 출생 이주 배경아동에 대한 출생통보제 시행을 주장한다.

총선요구안 발언 (난민)

김진 (난민인권네트워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한국 정부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했다고 홍보하고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와 난민인권센터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난민인정률은 1.49%를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난민인정률은 2%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가 제도를 남용하는 허위 난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재신청자 등 특정 난민 신청자에 대해 면접조사를 생략하고, 이의신청을 못 하게 하는 '난민인정심사 부적격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허위 난민 때문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높은 자격 심사 기준과 절차적 권리 미보장에 따른 종합적 결과입니다. 난민신청 과정에서 통번역 지원은 전무하고, 대부분의 서류는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심사관은 전국적으로 4명에 불과합니다.

어렵게 난민으로 인정받아도 정착 지원 기반은 사실상 전무하고 처우 지원 등 정책 역시 없습니다. 난민협약 상 난민은 아니더라도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한국 정부가 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인도적체류자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시리아, 예멘 등 돌아갈 수 없는 국가의 상황으로, 다른 나라에서라면 난민으로 인정받았어야 할 2,609명의 인도적체류자는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 뿐,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적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특히 난민 인정자와 달리 가족결합이 되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만나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난민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회부 결정의 남용으로 인해 공항에서 1년 넘게 구금되어 있는 난민들, 생계비, 주거, 의료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함에도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들의 처우 등 한국에서 난민은 입국하는 순간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심사제도를 운영해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 인권 보호와 처우 보장을 위한 법제도와 중장기적 난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난민인정자 뿐 아니라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의 권리 역시 강화되어야 하며,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가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항 밖에 비구금의 형태로 운영되는 거주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전근대적인 외국인보호소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몇 년 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껍기' 고문과 같은 반인권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법무부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개선방안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이후 고문을 합법화하는 보호장치의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신청자가 보호소에서 장기 구금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구금 기간의 상한이 없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입법에 대한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결정 이후 인천과 수원외의 보호실에 각각 3세, 6세 아동이 부모와 함께 구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규정을 따랐다는 해명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인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 한국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난민심사절차를 '허위 난민'을 거르기 위해서가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또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를 포함한 난민의 처우 개선과 정착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선도적인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22대 국회의 노력을 기대합니다.